

# 예 산 총 칙

2016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6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         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  | 일시차입한도액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
| 합 계           | 148,796,847 | 4,463,905 |
| 일반회계          | 129,075,099 | 3,872,253 |
| 특별회계          | 19,721,748  | 591,652   |
| 기타특별회계        | 19,721,748  | 591,652   |
| 의료급여기금        | 247,823     | 7,435     |
|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| 1,225,732   | 36,772    |
| 주거환경개선사업      | 501,173     | 15,035    |
| 주차장           | 17,460,754  | 523,823   |
| 지하수관리         | 235,266     | 7,058     |
|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 | 51,000      | 1,530    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안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는 1,242,155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,3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.